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IBK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IBK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bkasset.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13년 09월 17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년 12월 23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
|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 될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 될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표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나.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가. 일반위험
 - 나. 특수위험
 - 다. 기타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나. 환매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나. 과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세전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나. 주요 업무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2) 자산운용보고서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4) 기타장부 및 서류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2) 수시공시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58351)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B	종류 E	종류 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8352	93010	58501	A334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으로 모집규모나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집합투자업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매입)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1) 기준시간(오후 3시)이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2) 기준시간(오후 3시)경과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58351)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B	종류 E	종류 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8352	93010	58501	A334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06.07.10	최초설정
2006.10.09	집합투자규약 변경(집합투자업자보수 하향조정,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하향조정)
2008.05.06	집합투자규약 변경(투자대상 주식선물 추가)
2008.10.22	집합투자규약 변경(주식형비과세혜택 반영)
2009.05.04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명칭 변경 (기은SG 그랑프리 한국대표 주식투자신탁→ 기은SG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주식])
2009.08.28	변경등록 (운용전문인력 변경 : 신동걸 → 김영민, 정기갱신 및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반영 및 수익률등 업데이트)
2010.02.19	집합투자규약등 변경 ①펀드명칭, 집합투자업자명칭 변경 ②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금 유보내용 반영 ③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과세방법 변경 반영 ④투자대상인 주식에 공모주를 포함
2010.07.13	집합투자규약 변경 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지사유 변경
2010.11.09	제4기 결산에 따른 확정된 재무제표 반영
2011.01.13	집합투자업자 주소 이전으로 인한 신고서 변경
2011.05.04	집합투자규약 변경 ①전문투자자 가입전용 종류I 신설
2011.06.27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영민 상무 → 김현수 부장)
2012.02.0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현수부장 → 신동걸 상무)
2013.07.01	집합투자규약 변경(모자형으로 변경)
2013.10.07	자본시장법 개정(2013.08.29 시행) 반영 및 확정된 재무현황 업데이트
2013.12.23	비교지수(BM)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IBK자산운용(주)

주)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3.09.17 기준)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신동걸	1967	상무	34개	6,326억	-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 한국운용(98~07:주식운용) - IBK 자산운용(07.02~09.08) - KTB 자산운용(09.09~12.01) - IBK 자산운용(12.02~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주식부문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상기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현수	1973	부장	3개	351억	- 서울대 섬유고분자공학 - 동원투자신탁운용(99.12~05.06) - 한국투자신탁운용(05.07~06.04) - 피데스투자자문(06.05~07.06) - IBK 자산운용(07.06~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주식부문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상기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류재천	2005.01.17 ~ 2006.03.27
최용규	2006.03.27 ~ 2007.02.15
신동걸	2007.02.15 ~ 2009.08.18
김영민	2009.08.18 ~ 2011.06.22
김현수	2011.06.23 ~ 2012.01.31
신동걸	2012.02.01 ~ 현재

※상기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IBK 한국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IBK 한국대표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각 업종대표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 시장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판매보수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 A	납입금액 및 납입방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	연 0.75%	납입금액의 1%이내	-
종류 B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5%	납입금액의 0.5%이내	-
종류 E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	연 0.15%	납입금액의 1%이내	-
종류 I	투자자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인 경우	연 0.03%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 및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주)비교지수 : KOSPI × 100%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 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	------	---------

1.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이하	IBK 한국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60%이상
2.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0%이하
3.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상기 3.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펀드 주요 투자 대상]

(1) IBK 한국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2.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함)
5.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집합투자증권등	4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8.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 증권 of 차입	1 내지 4의 증권 of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	
10.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1.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2.신탁업자 고유의 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나. 투자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
동일종목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p>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같습니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p>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투자	이 투자신탁 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③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각 업종대표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주)비교지수 : $KOSPI \times 100\%$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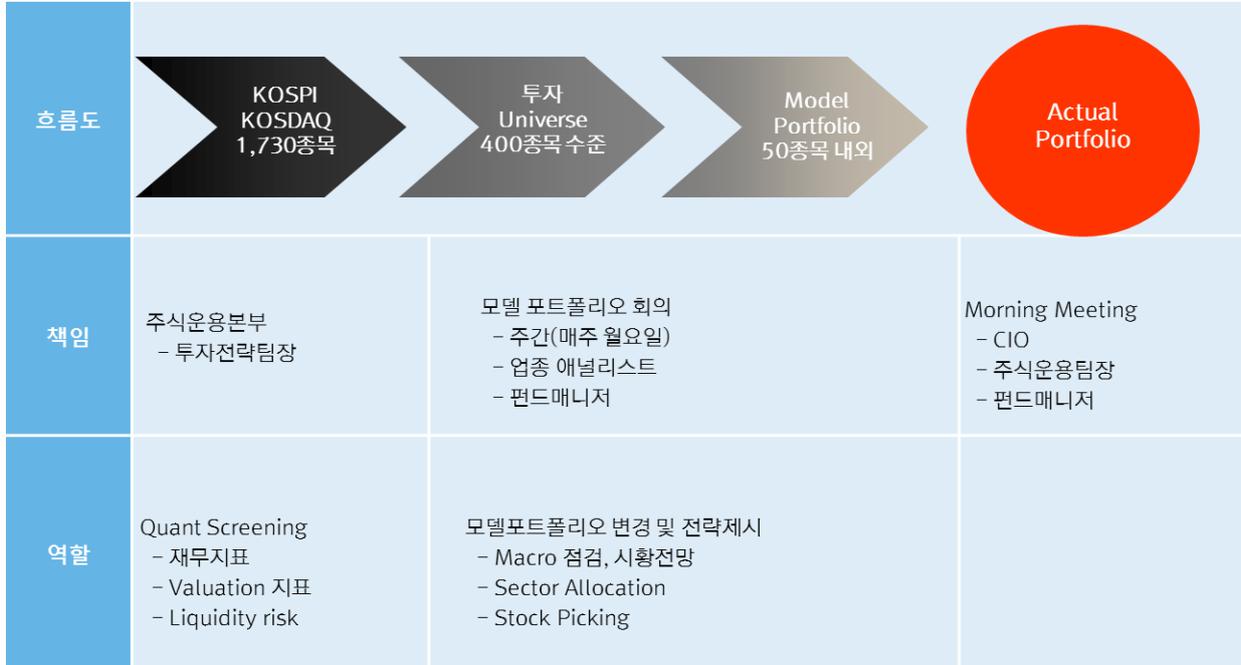
<모투자신탁의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 (1)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및 시장점유율 상위종목을 1차적으로 선정합니다.
- (2) 최초 포트폴리오 구성시 산업별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투자비율을 결정하나, 출하재고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벨류에이션 분석을 통해 산업 트렌드가 향후 1~3년 우상향 추세가 예상되는 업종의 경우 비중을 확대합니다.

(3) 상기 분석을 통하여 업종내 핵심투자종목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결정 흐름도



※ 상기의 프로세스 및 운용전략은 참고자료로서, 실제 운용시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험 관리

투자목적과 리스크 관리, 운용과 매매분리, 사전 운용지시 및 모델 포트폴리오 복제시스템을 통하여 독립된 위험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가하여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거래량이 적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오후 3시경과후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시와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 투자신탁재산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초기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제2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의 '11. 매입,환매,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7)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므로 주식시장 하락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위험	-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60% 이상인 증권투자신탁 주2)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이상인 경우주2)
2등급	높은위험	- 주식시장 인덱스를 추종하는 증권투자신탁(신탁계약상 주식 편입 비율 60% 이상) -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30%초과 ~ 60% 미만인 증권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미만인 경우
3등급	중간위험	-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30% 이하인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미만인 경우
4등급	낮은위험	- 투자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원금보존추구형
5등급	매우 낮은위험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MMF

주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IBK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주식시장 인덱스를 추종하는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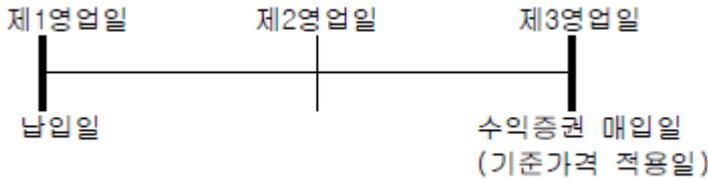
- 종류 A : 납입금액 및 납입방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
- 종류 B : 납입금액이 5 억원 이상인 경우
- 종류 E :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
- 종류 I : 투자자가 법 제 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인 경우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선취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각 목의 종류에 따라 부과합니다.

- (가) 종류 A : 납입금액의 1% 이내
- (나) 종류 B : 납입금액의 0.5% 이내
- (다) 종류 E : 납입금액의 1% 이내
- (라) 종류 I : 해당사항 없음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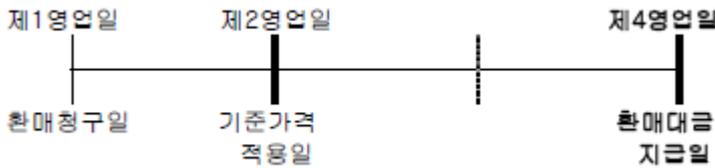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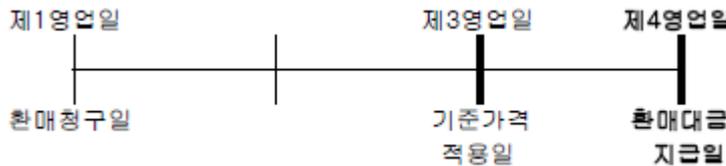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종류		종류A, B, E	종류 I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가)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②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② 투자신탁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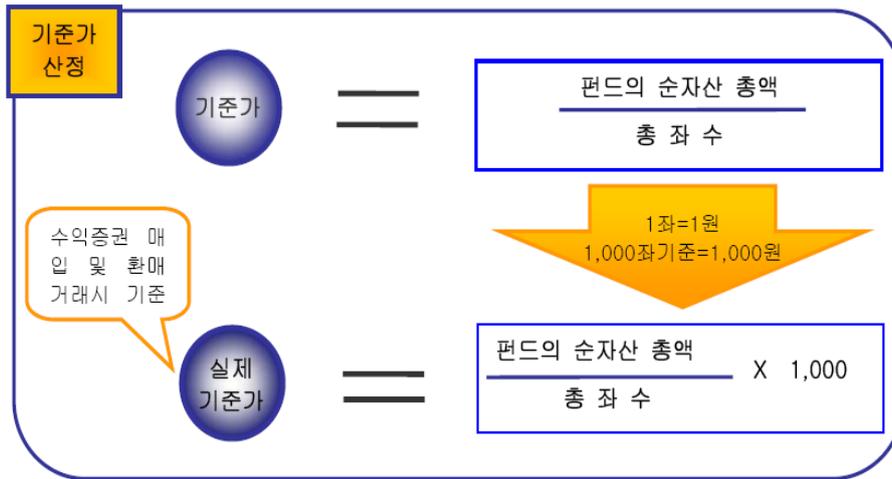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장외파생상품	당해 파생상품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 평가회사의 가격평가 방법 국내 KRW IRS금리 및 USD를 비롯한 주요 통화 IRS 금리를 기초로 하여 고정금리 부분 평가와 변동금리부분평가에 의한 차이에 의해 가격을 평가함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산술평균한 가격(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⑥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⑧ 기타 상기에 명시된 자산 이외에는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업무 담당임원,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준수적용여부 등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법 제 76 조제 4 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종류 A	종류 B	종류 E	종류 I	
보수구조	종류 A	종류 B	종류 E	종류 I	부과기준
선취판매수수료	1%이내	0.5%이내	1%이내	-	납입금액 기준
환매수수료	-	-	-	70%	90 일 미만 이익금기준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별 수익자의 자격>

보수구조	종류 A	종류 B	종류 E	종류 I
수익자의 자격	제한없음	납입금액 5억 이상	인터넷 가입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종류별 보수구조>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B	종류 E	종류 I	
집합투자업자보수	0.745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750	0.750	0.150	0.03	
신탁업자 보수	0.04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5				
기타 비용	0.0028	0.0028	0.0026	0.0028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5528	1.5528	0.9526	0.8328	-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1.5560	1.5560	0.9558	0.8364	

증권 거래비용	0.2363	0.2363	0.2363	0.2363	사유발생시
---------	--------	--------	--------	--------	-------

주1)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매매수수료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2)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라 합니다)을 모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모두투자신탁 및 모두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두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집합투자기구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3	514	901	2,05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63	515	903	2,055
종류 B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3	514	901	2,05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63	515	903	2,055
종류 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0	315	553	1,25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100	316	555	1,262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7	276	483	1,1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88	277	485	1,105

주)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액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BK 한국대표 증권 모두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연간 %)

자투자신탁명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합계
IBK 퇴직연금 액티브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0.397	0.26	0.03	0.013	0.7014
IBK 퇴직연금 액티브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0.397	0.26	0.03	0.013	0.7023
IBK 퇴직연금 액티브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0.397	0.26	0.03	0.013	0.7023

IBK 퇴직연금 액티브 5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0.397	0.26	0.03	0.013	0.7001
IBK 퇴직연금 한국대표 증권 자 투자신탁[주식]	0.397	0.26	0.03	0.013	0.7001
IBK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A	0.745	0.750	0.04	0.015	1.55
IBK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B	0.745	0.750	0.04	0.015	1.55
IBK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E	0.745	0.150	0.04	0.015	0.95
IBK 한국대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I	0.745	0.03	0.04	0.015	0.83
IBK 스타일 배분 증권 자투자신 탁[채권혼합] A	0.40	0.40	0.02	0.016	0.836
IBK 스타일 배분 증권 자투자신 탁[채권혼합] C1	0.40	0.90	0.02	0.016	1.336
IBK 스타일 배분 증권 자투자신 탁[채권혼합] C-e	0.40	0.45	0.02	0.016	0.886
IBK 스타일 배분 증권 자투자신 탁[채권혼합] C-i	0.40	0.15	0.02	0.016	0.586
IBK 스타일 배분 증권 자투자신 탁[채권혼합] C-f	0.40	0.03	0.02	0.016	0.466
IBK 스타일 배분 증권 자투자신 탁[채권혼합] C-w	0.40	0.00	0.02	0.016	0.436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

항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3-07-09	2012-07-09	2011-07-09
운용자산	135,363,154,101	95,699,225,304	53,269,887,747
증권	134,847,455,574	88,169,182,650	52,079,147,500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515,698,527	330,042,654	890,740,007
기타 운용자산		7,200,000,000	300,000,240
기타자산	110,654,676	221,922,761	852,076,125
자산총계	135,473,808,777	95,921,148,065	54,121,963,872
운용부채			
기타부채	96,406,647	199,410,946	1,009,302,375
부채총계	96,406,647	199,410,946	1,009,302,375
원본	75,763,569,572	54,676,424,093	25,813,067,142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59,613,832,558	41,045,313,026	27,299,594,355
자본총계	135,377,402,130	95,721,737,119	53,112,661,497
항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2-07-10~ 2013-07-09	2011-07-10~ 2012-07-09	2010-07-10~ 2011-07-09
운용수익	1,615,701,080	-8,019,540,807	5,462,352,047
이자수익	159,306,817	128,999,235	23,097,731
배당수익	1,260,846,190	874,110,211	240,676,896
매매/평가차익(손)	195,241,398	-9,023,020,545	5,198,567,356
기타 수익	306,675	370,292	10,064
운용비용	415,453,106	387,914,168	106,329,488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5,126,503	5,444,561	3,074,409
기타 비용	410,326,603	382,469,607	103,255,079
당기순이익	1,200,247,974	-8,407,454,975	5,356,022,559
매매회전율(%)	238	182	153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계 정 과 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3-07-09	2012-07-09	2011-07-09

자 산			
I. 운 용 자 산	135,363,154,101	95,699,225,304	53,269,887,747
1. 현금 및 예치금	515,698,527	330,042,654	890,740,007
예 치 금	515,698,527	330,042,654	890,740,007
증 거 금			
2. 대 출 채 권		7,200,000,000	300,000,240
콜 론		7,200,000,000	300,000,240
R P 매 수			
매 입 어 음			
대 출 금			
3. 유 가 증 권	134,847,455,574	88,169,182,650	52,079,147,500
지 분 증 권		88,169,182,650	52,079,147,500
채 무 증 권			
수 익 증 권	134,847,455,574		
기타 유가증권			
4. 파 생 상 품			
파 생 상 품			
5. 부동산 및 실물자산			
부 동 산			
실 물 자 산			
6. 기타 운용자산			
기타 운용자산			
II.기 타 자 산	110,654,676	221,922,761	852,076,125
1. 매도가능증권미수금	110,410,678	169,880,711	802,053,946
2. 정 산 미 수 금			
3. 미 수 이 자	243,998	891,450	835,179
4. 미 수 배 당 금		51,150,600	49,187,000
5. 기 타 미 수 금			
6. 외화환산손익조정			
7. 파생상품평가손익조정			
자 산 총 계	135,473,808,777	95,921,148,065	54,121,963,872
부 채			
I. 운 용 부 채			
1. 파 생 상 품			
2. R P 매 도			
3. 기타 운용부채			
II.기 타 부 채	96,406,647	199,410,946	1,009,302,375
1. 매도가능증권미지급금		95,207,608	936,369,378
2. 정 산 미 지 급 금			
3. 해 지 미 지 급 금	92,424,777	99,430,938	69,868,007
4. 수 수 료 미 지 급 금	3,981,870	4,772,400	3,064,990
5. 미지급 이익분배금			

6. 기타 미지급금			
부채총계	96,406,647	199,410,946	1,009,302,375
자 본			
I. 원 본	75,763,569,572	54,676,424,093	25,813,067,142
II. 이익잉여금	59,613,832,558	41,045,313,026	27,299,594,355
자본총계	135,377,402,130	95,721,737,119	53,112,661,497
부채 및 자본총계	135,473,808,777	95,921,148,065	54,121,963,872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계정과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2-07-10~ 2013-07-09	2011-07-10~ 2012-07-09	2010-07-10~ 2011-07-09
I. 운용수익	1,615,701,080	-8,019,540,807	5,462,352,047
1. 투자수익	1,420,459,682	1,003,479,738	263,784,691
이자수익	159,306,817	128,999,235	23,097,731
배당금수익	1,260,846,190	874,110,211	240,676,896
수수료수익			
기타 투자수익	306,675	370,292	10,064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5,368,354,295	5,572,880,877	6,558,111,772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15,364,831,714	5,572,880,877	6,558,111,77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3,522,581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외환거래/평가차익			
기타 이익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5,173,112,897	14,595,901,422	1,359,544,416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12,550,269,576	14,595,901,422	1,359,544,416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2,622,843,321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외환거래/평가차손			
기타 차손			
II. 운용비용	415,453,106	387,914,168	106,329,488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지급수수료	5,126,503	5,444,561	3,074,409
5. 기타비용	410,326,603	382,469,607	103,255,079
III. 당기순(손실)이익	1,200,247,974	-8,407,454,975	5,356,022,559
1,000 좌당 순(손실)이익	18	-204	43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주식]								
2010-07-10~2011-07-09	80	124	257	497	78	143	258	531
2011-07-10~2012-07-09	258	531	465	845	176	335	547	957
2012-07-10~2013-07-09	547	957	530	989	319	605	758	1,354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 A[주식]								
2010-07-10~2011-07-09	113	113	311	379	102	120	322	421
2011-07-10~2012-07-09	322	322	844	736	249	221	918	769
2012-07-10~2013-07-09	918	769	774	688	544	488	1,147	966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 E[주식]								
2010-07-10~2011-07-09	4	4	9	10	6	7	7	9
2011-07-10~2012-07-09	7	7	11	10	5	5	12	10
2012-07-10~2013-07-09	12	10	13	11	10	9	15	13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I[주식]								
2010-07-10~2011-07-09	0	0	200	200	0	0	100	100
2011-07-10~2012-07-09	100	100	108	100	0	0	208	175
2012-07-10~2013-07-09	208	175	328	290	100	92	436	371

[기간 중 재투자]

(단위:원)

집합투자기구	기간	기간중 재투자	
		좌수	금액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주식]	2010-07-10~2011-07-09	635,383,424	635,334,794
	2011-07-10~2012-07-09	10,074,816,544	10,074,413,854
	2012-07-10~2013-07-09	0	0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 A[주식]	2010-07-10~2011-07-09	606,990,120	606,942,767
	2011-07-10~2012-07-09	9,858,362,459	9,857,964,934
	2012-07-10~2013-07-09	0	0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 E[주식]	2010-07-10~2011-07-09	28,393,304	28,392,027
	2011-07-10~2012-07-09	216,454,085	216,448,920
	2012-07-10~2013-07-09	0	0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I[주식]	2010-07-10~2011-07-09	0	0
	2011-07-10~2012-07-09	0	0
	2012-07-10~2013-07-09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

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주식]		(12.09.18~13.09.17)	(11.09.18~13.09.17)	(10.09.18~13.09.17)	(08.09.18~13.09.17)	(06.07.10~13.09.17)
	집합투자기구	2.45	7.94	6.03	12.74	9.81
	비교지수	-0.49	5.71	3.83	7.7	6.73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 A[주식]		(12.09.18~13.09.17)	(11.09.18~13.09.17)	(10.09.18~13.09.17)	(08.09.18~13.09.17)	(06.07.10~13.09.17)
	집합투자기구	0.87	6.27	4.4	11.03	8.14
	비교지수	-0.49	5.71	3.83	7.7	6.73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 E[주식]		(12.09.18~13.09.17)	(11.09.18~13.09.17)	(10.09.18~13.09.17)	(08.09.18~13.09.17)	(06.07.13~13.09.17)
	집합투자기구	1.48	6.91	5.03	11.69	8.93
	비교지수	-0.49	5.71	3.83	7.7	6.88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I[주식]		(12.09.18~13.09.17)	(11.09.18~13.09.17)	(11.05.09~13.09.17)	(..~..)	(11.05.09~13.09.17)
	집합투자기구	1.6	7.04	-2.89		-2.89
	비교지수	-0.49	5.71	-2.47		-2.47

주1)비교지수 : KRX100 × 100%(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주2)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KOSPI ×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 [주식]		(12.09.18~13.09.17)	(11.09.18~12.09.17)	(10.09.18~11.09.17)	(09.09.18~10.09.17)	(08.09.18~09.09.17)
	집합투자기구	2.45	13.72	2.3	14.93	32.92
	비교지수	-0.49	12.29	0.16	7.21	20.79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 A[주식]		(12.09.18~13.09.17)	(11.09.18~12.09.17)	(10.09.18~11.09.17)	(09.09.18~10.09.17)	(08.09.18~09.09.17)
	집합투자기구	0.87	11.96	0.76	13.22	30.98
	비교지수	-0.49	12.29	0.16	7.21	20.79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 E[주식]		(12.09.18~13.09.17)	(11.09.18~12.09.17)	(10.09.18~11.09.17)	(09.09.18~10.09.17)	(08.09.18~09.09.17)
	집합투자기구	1.48	12.64	1.36	13.88	31.72
	비교지수	-0.49	12.29	0.16	7.21	20.79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I[주식]		(12.09.18~13.09.17)	(11.09.18~12.09.17)	(..~..)	(..~..)	(..~..)

	집합투자기구	1.6	12.77		
	비교지수	-0.49	12.29		

주1)비교지수 : KRX100 × 100%(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주2)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KOSPI ×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3.07.09. 기준, 단위: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 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원화	0	0	0	134,847	0	0	0	0	0	516	2,090	134,833
	(000)	(000)	(000)	(9954)	(000)	(000)	(000)	(000)	(000)	(038)	(155)	(10000)
합계	0	0	0	134,847	0	0	0	0	0	516	2,090	134,833
	(000)	(000)	(000)	(9954)	(000)	(000)	(000)	(000)	(000)	(038)	(155)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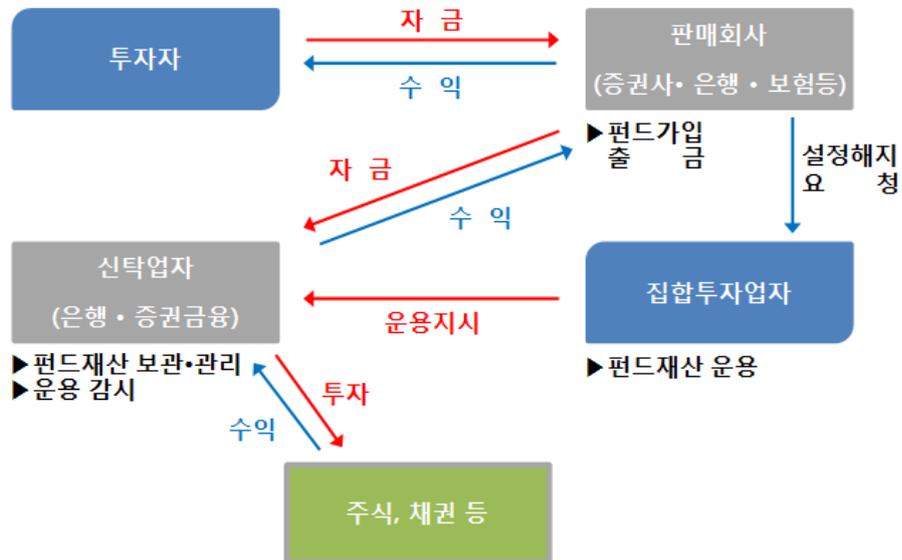
(1)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원,%)

업종	평가액	비중
IBK 한국대표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34,847,455,574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2013.09.17기준)

회사명	IBK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연락처 : 02-727-8800, www.ibkasset.com)
회사 연혁	2004.10.26 : 기은 SG 자산운용 설립 2010.01.28 : 회사명 변경(기은 SG 자산운용 → IBK 자산운용) 2010.12.17 : 본사 이전
자본금	200 억
주요주주현황	중소기업은행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

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재무상태표 - 단위:억원]

[포괄 손익계산서 - 단위:억원]

계정과목	2013.3.31.	2012.3.31.	계정과목	'12.4.1 ~'13.3.31	'11.4.1 ~'12.3.31
현금및예치금	281	255	영업수익	117	102
매도가능금융자 산	5	5			
유형자산	8	10			
무형자산	6	14			
기타자산	65	58			
자산총계	365	342			
기타부채	12	6	영업이익	36	27
부채총계	12	6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28	28
자본금	200	200	당기순이익	20	20
이익잉여금	153	136			
자본총계	353	336			

라. 운용자산 규모

(2013.09.17 현재, 단위:억원)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재간접					
수탁고	9,944	14,791	6,325	6,775	289	84	772	-	55,285	94,264

주)투자일임 포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 02)1588-9999
회 사 연 혁 등 (홈 페이지 참조)	1963.02 국민은행으로 설립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02-2014-2000
회 사 연 혁 등 (홈 페이지 참조)	1999. 설립 (www.scff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2001.05 설립 (www.koreaap.com)	2000.06. 설립 (www.nicepni.com)	2000.06. 설립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 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

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에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에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에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의 3) 내지 4) 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나)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다)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라)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없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에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나)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다)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법 제247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5)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용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②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③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월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증권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

▶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은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평가 항목

중개거래시장점유율, 거래관련자격보유,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